

「2025년도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및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신규과제 모집공고

2025년도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산업체는 2025.2.20(목)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녹색 기술·제품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진출 계획을 엄선하여,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실증 및 무역상사 매칭 등을 통해 해외 진출·수주 촉진 및 해외시장 발굴 지원

※ 추진근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제4호(환경산업 환경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2

공고 개요

- (사 업 명)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및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 (주최/주관)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전담기관')
- (사업 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5. 11. 30. (1단계)
 - * 1~2단계의 지원을 신청한 업체는 1단계의 평가결과에 따라 2단계 협약 별도 추진
- (사 업 비) 총 74억 원
 - * 금번 공고에 의한 신규과제는 58억 원 내외, 전년도 계속과제는 16억 원 내외 배정 예정
- (대상 국가) 제한 없음

- **(대상 업체)**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법인 중 하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추가적인 사업참여 제한사항은 사업안내서 참조)
 - 본 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소유권 또는 실시권 등을 확보한 업체(증빙 필수)
 - 현지위탁기관 보유 업체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분야에 한정)
 - * 현지위탁기관이란 향후 신청기업과 공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진출대상국의 법인형 사업파트너를 의미하며 위탁기관의 참여도(역할, 비용분담, 통관부가세 납부의지 등)는 선정평가항목에 포함
- **(대상 과제)** 하기의 정의에 해당하는 해외 진출 목적의 사업 과제(유형에 따른 선정방향은 사업안내서 참조)
 - **(현지화 과제)** 현지의 정책·문화·경제 여건에 적합하도록 개조하여 개도국 등 환경문제가 만연한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술·제품·서비스 등
 - **(혁신형 과제)** 新환경규제 대응 또는 혁신 기술에 기반하여 선진국 등 우위 기술을 추구하는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술·제품·서비스 등
 - **(최적화 과제)** 측정·모니터링·인공지능 등의 IT 솔루션에 기반하여 환경 재해를 예측하거나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제품·서비스 등
- **(지원 분야)**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또는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 중 택일
 - * 본 사업에서의 '녹색기술', '녹색제품'은 녹색산업체가 보유한 기술과 제품을 의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상범주외는 상이)

①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

- 바이어의 구매조건 및 기술의 특성상 현지실증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파일럿* 제작·운반·운영 등 지원
- * 실제 규모의 장비나 공정 등을 도입하기 전에 작은 규모로 실험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 제품, 시스템

모집구분		주요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주4)}	
단년도 사업 ^{주1), 주2)}		- 현지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현지조사·분석 - 파일럿 설계·제작 - 현지 운반·설치·운영 등	협약일 ~ '25.11.30.	최대 5억원	
다년도 사업 ^{주3)}	1단계 (1년차)	- 현지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현지조사·분석 - 파일럿 설계·제작 등	협약일 ~ '25.11.30.	최대 3억원	총 최대 5억원
	2단계 (2년차)	- 현지 운반·설치·운영 등	'26.1.1. ~ 10.31.	최대 2억원	

- 주1) 단년도 사업은 협약기간 내에 파일럿 제작과 현지실증이 필요한 업체가 신청 가능
주2) 현지실증용 파일럿 장치 등이 준비된 경우도 단년도 사업으로 신청 가능
주3) 다년도 사업은 각 단계별 협약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하되 1단계 사업결과에 대한 중간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2단계 계속지원
주4) 최종 지원금액(국고보조금)은 신청기업의 아이템(소·부·장 등)의 유형, 사업비활용계획, 실증사업의 규모, 진출대상국(선진국, 개도국) 등을 종합고려하여 선정평가 시 결정

②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

- 제품서비스의 형태로서 바이어의 발굴과 해외 인증특허 취득이 우선인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바이어 발굴, 시제품* 개발 등 지원

* 제품의 디자인이나 기능, 작동원리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한 모형

모집구분	주요 지원내용	지원 기간·금액
무역상사 매칭형 (전담기관이 지정한 무역상사에서 대상 아이템 선정)	- 무역상사의 현지 네트워크(영업지사 등) 활용 - 무역상사 주최 수출상담회 참여 기회 - 무역상사에 의한 견적서, 계약 등 자문 - 수·출입 통관업무 - 무역상사의 현지 마케팅 활동 - 특허·인증 취득 및 시험분석 활동 - 글로벌 플랫폼 등록, 박람회 전시, 통·번역 활동 - 현지 활동비(항공권, 체류비, 임차료 등) 등	협약일~'25.11.30. 최대 1.4억 원 (중소·중견 무역상사 활동비 포함)
무역상사 공동참여형 (신청기업이 무역상사와 함께 컨소시엄으로 사업참여)	- 수·출입 통관업무 - 무역상사의 현지 마케팅 활동 - 특허·인증 취득 및 시험분석 활동 - 글로벌 플랫폼 등록, 박람회 전시, 통·번역 활동 - 현지 활동비(항공권, 체류비, 임차료 등) 등	

○ (자기부담금) 신청업체의 성격에 따라 최저부담금 결정

신청업체 분류	국고보조금 지원범위	자기부담금 중 현금비율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내	20%이상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컨소시엄 (중소·중견기업이 대표기업이어야 함)	총 사업비의 60% 이내	

※ 총 사업비란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의 합산 금액

<중소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 구성 예시>

총 사업비 구성 (국고보조금을 1.4억 원 신청하는 경우)		
$\text{총사업비} = \frac{\text{국고보조금}}{\text{국고보조금 지원범위 비율}} \quad (\text{사례} : 200,000,000\text{원} = \frac{140,000,000\text{원}}{0.7})$		
총 사업비	200,000,000원	
국고보조금	140,000,000원	
자기부담금	60,000,000원 이상	
	현금비율(20% 이상)	현물비율(80% 이하)
	12,000,000원	48,000,000원

3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 기간) 2025. 1. 22(수) ~ 2025. 02. 20(목)
- (접수 방법) 온라인 제출 (<https://www.bojo.go.kr/bojo.do>, 사업책임자의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모바일 OTP로 회원가입 필요)
-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사업안내서 참조)
 - ※ (필수) 온라인 제출시 첨부 '제출서류 형식' 양식에 맞추어 제출

- (사업 관련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 정영도 선임연구원 (032) 540-2178, ydjung@keiti.re.kr
 - 안종혁 전문연구원 (032) 540-2186, jhan4@keiti.re.kr
 - 최우진 연구원 (032) 540-2189, ekfrqkf0000@keiti.re.kr

※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안내(온라인 화상)

일자: 2025년 1월 24일(금) 9:30

(* 현지실증 지원사업 설명 시작시간 14:00)

참석을 희망하시는 기업은 1월 23일(목)까지 연락처를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진 연구원, (032) 540-2189, ekfrqkf0000@keiti.re.kr